DEDICA
—DEDICATED LAWYERS—

외국 기관의 베트남인 채용: 2026년 11월 15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?

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

근거: 2026년 9월 25일자 정부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(시행령 제152/2020/NĐ-CP호와 비교)

www.dedica-law.com · david@dedica-law.com · +84 39 969 0012

외국 기관이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종전 (시행령 제152/2020/NĐ-CP호)	2026년 11월 15일부터 (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)
채용 수요를 통지할 의무도, 채용정보를 공개 게시할 의무도 없었습니다.	**관리 기관·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채용정보를 공개 게시해야 합니다.**
법적 근거: "…베트남인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외국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**직접 채용하거나, 직업서비스기관·근로자파견업체 또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채용·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 채용**…" (시행령 제152/2020/NĐ-CP호 제24조 제1항)	**법적 근거**: "…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외국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**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**. 통지는 직접, 우편서비스 또는 본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관리 기관·단체의 공식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하며, 직무와 채용 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. 또한 외국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**베트남인 근로자 채용정보를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** …" (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6조 제1항)

관리 기관·단체란 누구입니까? 외교부가 분권·위임·업무 부여·주문 또는 입찰을 통해 베트남인 근로자 관리를 맡긴 기관·단체를 말합니다 (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5조).

근거: 시행령 제152/2020/NĐ-CP호 제24조 제1항;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5조, 제6조 제1항, 제13조 제1항

어떤 외국 기관·단체 및 개인이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의 적용 대상입니까?

1 **외국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**
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3조 제2항 a호

2 **유엔 체제에 속한 국제기구, 정부간 국제기구, 지역·소지역 기구의 대표기관**
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3조 제2항 a호

3 **외국 정부 소속 기관의 대표사무소**
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3조 제2항 b호

4 **외국 통신사·신문·방송사의 상주사무소**
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3조 제2항 c호

5 **베트남 관할 당국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 비정부기구**
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3조 제2항 d호

6 **위 기관에서 근무하며 베트남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**
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3조 제3항

근거: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3조 제2항, 제3항

국가 일자리 거래 플랫폼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까?

종전 (시행령 제152/2020/NĐ-CP호)

규정 없음

시행령 제152/2020/NĐ-CP호는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정보의 공개 게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.

2026년 11월 15일부터 (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)

국가 일자리 거래 플랫폼 게시는 필수가 아닙니다. 기관·단체는 세 가지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:

1. **국가 일자리 거래 플랫폼** (www.vieclam.gov.vn)
2. **기타 합법적인 일자리 정보 포털**
3. **기관·단체의 공식 웹사이트**

법적 근거:
"…외국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정보를 국가 일자리 거래 플랫폼(주소: https://www.vieclam.gov.vn) **또는 기타 합법적인 일자리 정보 포털 또는 해당 기관·단체의 공식 웹사이트**에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…" (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6조 제1항)

근거: 시행령 제152/2020/NĐ-CP호 제24조;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6조 제1항

적용 대상 기관·단체는 어떤 단계로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·관리합니까?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통지 및 게시 관리 기관·단체에 서면으로 통지(직무, 채용 인원)하고 세 가지 채널 중 하나에 채용정보를 공개 게시합니다.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6조 제1항	**채용** 기관·단체가 직접 채용하거나, 제공한 직무기술서에 따라 관리 기관·단체에 지원자의 선발·추천을 요청합니다.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6조 제2항, 제3항	**근로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** 기관·단체는 근로자의 성명, 개인식별번호, 직무, 근무 개시 시점을 통지합니다. 근로자는 개인정보 양식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.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7조 제1항, 제2항 및 제8조	**근로계약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** 기관·단체는 관리 기관·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료 사유를 명시합니다.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7조 제4항

관리 기관·단체에 대한 모든 통지는 직접, 우편서비스 또는 해당 기관·단체의 공식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보냅니다.

근거: 시행령 제371/2026/NĐ-CP호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

DEDICA
—DEDICATED LAWYERS—

문의하기

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나 도와드립니다. 지금 바로 연락하시어 상담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.

기업·투자
형사

상시 법률자문
인수합병(M&A)

분쟁 해결
상표·저작권

주소

호찌민시 Xuân Hòa 동 Hai Bà Trưng 171, A&T 빌딩 11층

전화

+84 39 969 0012

이메일

david@dedica-law.com

웹사이트

www.dedica-law.com

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아 보세요.